

주식회사 케이아이 이용약관

제 1 장 일반 조항

제 1 조(약관의 적용)

1. 본 약관 및 내규(이하 "약관"이라고 함)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렌터카(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차용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려야 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특별 계약에 대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일반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예측

제 2 조 (예약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렌트하는 경우,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가격표에 동의함으로써 차종, 용도,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아동용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성 및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가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소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을 승낙합니다.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별도로 지정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3 조 (예약변경)

1. 차용인이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차입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차용인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4 조(예약의 취소 등)

1. 차용인은 별도로 지정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이하 "취소"라고 함)할 수 있습니다.
2. 차입자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간으로부터 1 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3. 전항 2 호의 경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사는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시점에 수령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차용인에게 돌려줍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반납 불가, 리콜 등의 사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차용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접수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취소 수수료>

탑승 8일 전 무료

7~6 일 전 10%

5~3 일 전 20%

3~1 일 전 30%

당일 50%

제 3 장 대출

제 5 조 (렌탈 요금)

1. 대여료는 다음의 총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요금표에 각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액세서리 3 면제 요금 4 편도 요금 5 연료 6 발송 수수료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렌트 시 핫카이도 교통국장에게 통지한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 2 조에 따라 예약 후 대여료가 개정되는 경우, 예약시 적용된 가격표에 따라 변경한다.

제 6 조 (임대 계약의 체결)

1. 차용인은 차입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회사는 본 계약서, 수수료표 등에 명시된 대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제 3 항 또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차용인의 기타 정보의 제공 또는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경우, 차용인은 제 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당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헤이세이 7년 6월 13일 지유 제 138호) 제 2(6)항 및 (7)항에 따라 렌터카 장부(렌터카 원본표) 및 제 13조에 규정된 렌터카 증명서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 운전 면허증을 선택하고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 경우, 차용자가 운전자인 경우에는 차용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고, 차용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자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차용자와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기간 동안 차용자와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의 통지를 요청하며, 대출자와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6. 당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에게 신용카드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차입조건의 변경)

1. 차용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제 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차입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차용인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차입 조건의 변경이 임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변경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임대 조건)

1. 차입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 (1) 렌터카 운전이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2) 술에 취해 있을 때
- (3) 마약, 각성제, 희석제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 (4) 6 세 미만의 유아를 유아용 시트가 없는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
- (5) 그 사람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조직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인 경우 또는 다른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6) 다른 렌터카 영업의 렌탈에 있어서 제 22 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7) 기타 본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1) 렌탈 가능한 렌트카가 없는 경우
- (2) 예약시에 지정한 운전자가 렌탈 계약 체결 시점의 운전자와 다른 경우
- (3) 과거의 임대료의 지불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 (4)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 16 조의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5) 과거의 렌트카(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렌트를 포함)에 있어서 제 17 조 제 6 항 또는 제 22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6) 과거의 렌탈에 있어서의 렌탈 계약 또는 보험 계약의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7)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전항 2 호의 경우, 차용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용자는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취소수수료를 납부하고, 회사는 차용인이 예약취소료를 지불한 때에 수령한 예약취소수수료를 차용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9 조 (대체 렌터카)

1. 회사가 사고, 도난 또는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예약에서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의 렌터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청구를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을 제외하고 예약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량 등급의 대여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차량 종류등급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하며, 예약차량 등급의 대여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체렌터카의 대여료가 적용됩니다.
3. 임차인은 제 1 항에 규정된 대로 대체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접수된 예약 신청서를 반송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대출불능의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제 4 조 제 4 항의 예약취소에 따라 처리하고, 회사는 받은 예약신청료를 환불합니다.
5. 제 3 항의 경우, 제 1 항에 규정된 대출불능의 사유가 사고, 도난, 반납불가, 회수, 천재지변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 4 항 제 5 항의 예약취소에 따라 처리하며, 당사는 이미 받은 예약신청료를 환불합니다.

제 10 조 (면책 조항)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취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2. 회사와 차용인은 제 4 조 및 제 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의 취소 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실패에 대해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렌탈 계약은 차입자가 당사에 렌탈 요금을 지불하고 회사가 렌트카(액세서리 및 액세서리 포함)를 차용자에게 인도할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는 렌탈 요금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2. 전항에 규정된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차입개시일과 일시, 장소에 한다.

제 12 조(렌트 차량의 확정)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8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비를 거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를 렌트할 때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 2 항(일일점검 및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별도로 지정된 검사표에 따라 차체 및 부속품의 외관을 검사하여 렌터카에 유지 보수 결함이 없으며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항의 확인 결과 렌터카에서 정비 결함이 발견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제 13 조(임대료 증명서의 발급, 운반 등)

1. 회사가 렌터카를 인도할 때,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지방교통국 육상교통국장이 지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렌터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 전항에 따라 발행된 렌터카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동시에 렌트 증명서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 4 장 사용법

제 14 조(차용인의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가 렌트카에 인도된 시점부터 당사에 반환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 함) 우수한 관리자의 관리 하에 렌트카를 사용 및 보관해야 합니다.

제 15 조(일일 점검 및 유지 보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사용하기 전에 두 도로 운송업체의 제 47-2 조에 규정된 대로 렌트 차량을 매일 검사 및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제 16 조(금지 행위)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도로 운송법에 근거한 회사의 동의 및 허가를 얻지 않고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 (2) 소정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제 6 조 제 3 항의 렌터카 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3) 렌터카의 전대, 제 3 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타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기타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차번을 위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렌터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행위
- (5) 회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지포 또는 부스트로서 이용하는 행위
- (6) 법령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행위
- (7) 당사의 동의 없이 렌터카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 (8) 일본 국외에서 렌터카를 반출할 때
- (9) 전항의 사항 이외에 대여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제 17 조(불법주정차 등의 경우의 대책)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렌터카 이용 중 불법주차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을 부담하고 불법주차와 관련된 견인 및 보관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회사가 위반 행위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시간까지 운전자에게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지시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렌트카가 이동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경찰로부터 렌트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차입자 또는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통지서, 납부표 또는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당사가 정하는 위반 행위 및 위반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과 위반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준수할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합격서")에 서명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인정서, 대여증명서 등의 서류를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차입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주차 위반과 관련된 벌금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가 주차 위반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검색하거나 렌터카를 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부담하는 경우, 차용인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의 지불로 인한 방치 위반 수수료의 환불을 받은 경우, 회사는 받은 방치 위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6.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 수수료의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전항에 기재된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방치 위반에 관한 비용 미납을 전국 렌터카 협회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 5 장 반환

제 18 조 (반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렌터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렌탈 기간 내에 렌트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회사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제 19 조 (반납시 렌트카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의 입회하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마모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송 당시의 상태로 렌트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납할 때 임차인 또는 동승자가 렌트카에 소지품을 남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반납 후 분실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임대료 미정량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전항 이외에 휘발유나 디젤유 등의 연료가 렌터카 반납 시에 보충되지 않은 경우(가득 차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연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20 조(렌터카 등의 반납 시기)

1. 차용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차입 기간을 연장한 경우, 차용인은 회사가 정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차입 기간을 초과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용인은 전항에 명시된 금액 외에 초과 수수료의 2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21 조(렌터카 등의 반납 장소)

1. 지정된 반납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납 장소 변경에 따른 배송 비용은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지정된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트카를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반납 장소 변경에 따른 배송 비용의 2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22 조(반환불가의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1. 차입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당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물건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당사는 형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고, 전국 렌터카 협회에 반납 불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3. 제 1 항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또는 도난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제 23 조 고장난 경우의 대책

1. 임차인은 렌터카 이용 중 이상이나 오작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주행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한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24 조 (이유)

1. 임차인은 이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회사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전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는, 당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사고에 관한 회사 및 회사가 계약을 맺은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3)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법정 외 합의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사고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에 협력합니다.

제 25 조(절도)

이용 중 렌트카가 도난당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2) 즉시 회사에 손해 사실을 신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난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맺은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제 26 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

1. 이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전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미 받은 렌탈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이행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차인이 렌탈 전에 존재했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인 경우, 임차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4. 임차인이 전항에 정하는 대용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료를 전액 환불하며,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차용인, 운전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여 후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수령한 대여료에서 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6. 차용인과 운전자는 이 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배상과 배상

제 27 조(회사에 의한 보상)

대여 기간 중에 회사가 차용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차용인에 의한 보상과 사업보상)

1 차용인이 사용 중 제삼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차용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차용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 정한 손해 중 사고 또는 도난으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요금표에 규정된 대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제 29 조(보험)

임차인이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험증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개인보상금 : 1 인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2) 객관적 보상 1 사고도 무제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 포함) : 50,000 엔부터 공제 가능

(3) 차량 보상 1 사고 정도 시가 : 50,000 엔에서 공제 가능

(4) 신체 상해: 인당 무제한

2. 전항에 규정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차용인이 부담한다.

3. 차용인은 손해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면제를 부담해야 합니다.
4. 경찰 또는 당사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대여 후 제 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제 16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기타 차용인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차용인은 손해보험 및 당사의 보상제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전항 3 항 이외에 손해보험의 보험증권의 면책 조항이 (보험금 미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에 규정된 보험 및 보상은 성립하지 않으며, 차용인은 이러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6. 회사가 차용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지불한 경우, 차용인은 즉시 회사가 지불한 금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 7 제 1 항에 규정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임대료에 포함된다.

제 8 장

제 30 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탈 기간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 8 조 제 1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통지나 요구 없이 렌탈 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렌트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료를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동의를 종료)

차용인은 대여 기간 중에도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대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용인에게 받은 임대료에서 임대료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에 정하는 계약을 해지할 때, 당사에 다음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취소 수수료 > = (계약 대출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임대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x 50%

제 9 장 기타

제 32 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동의)

차용인은 회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7 조 제 6 항 또는 제 22 조 제 1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사실 및 정보를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국렌터카협회에 등록하고, 그 정보는 전국렌터카협회, 회원도도부현 렌터카조합 및 그 회원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등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각종 캠페인의 개최 등에 대해 광고성 인쇄물의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을 통지하기 위해
- (3)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차입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제 33 조 (상계)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차용인에게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차용인이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소비세)

차용인은 본 이용 약관에 따라 거래에 부과된 소비세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 35 조(연체료)

차용인과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차용인과 회사는 연 14.6%의 비율로 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36 조(세부 규정)

회사는 본 약관에 대한 세부 규칙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별도로 세부규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회사 홈페이지 및 가격표에 명시합니다.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37 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근거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추가 조항 이 약관은 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 령화 7년 3월 1일